

2022 성장촉진지역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는 도내 성장촉진지역 내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성장촉진지역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해당 지역 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24일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도내 성장촉진지역 중소기업의 청년층 구인난 해소 및 청년근로자 장기근속 유도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대상지역 : 5개 지역

- ❖ 성장촉진지역 : 해당 지역의 경제·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
- ❖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지정('19.09) :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사업대상

- (참여기업) 도내 성장촉진지역 소재 제조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기업 및 중기업
- (참여청년) 해당기업에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한 청년근로자 (19세 ~ 39세 이하, 충북 거주, 월급여 350만원 이하)

- 지원기간 : 2022. 1. 1. ~ 2022. 12. 31.(1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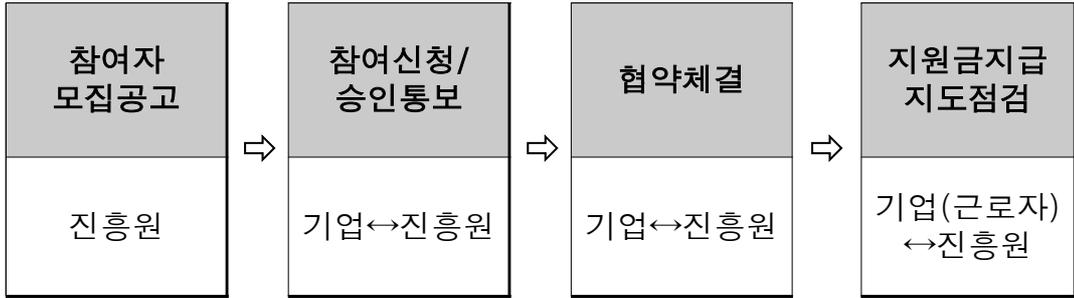
1인 최대 2년 지원(1년단위 심사)

○ 지원내용 : 지원금 매월 30만원씩, 청년에게 직접 지급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5인, 사업비 소진시까지

※ 승인인원(재참여)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 사업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도 있음

○ 참여 주체별 역할

- (진흥원) 사업운영, 기업승인 및 지원금 관리, 지도점검
- (사업주) 참여 및 지원금 신청, 청년 재직관리, 행정협조 등
- (근로자) 지원금 수급, 직무적응 및 장기근속 노력 등

2. 신청대상 및 요건

□ 기업요건 (모두충족)

- ① 성장촉진지역(5개군)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인 기업
- ② 제조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기업 및 중기업** [별첨1, 2] 참조

◆ **피보험자수 기준**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및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발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 제출서류 불가 시 중소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매출액, 자산총액, 독립성 기준)

○ 제외대상*(다음의 항목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 되는 경우)

- 비영리 사업장 및 법인, 근로자 과건 및 공급업자(용역업체 등)
-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이력이 있는 기업
- 고용보험 등 미가입 및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사업장
- 6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에 따른 청년고용 사업체
- 기타 소비·향락·오락 등 청년취업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

❖ 제외대상 기업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i)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ii)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 중소기업 범위해설(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참조
 - iii)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 * 외국법인은 사업자 등록번호 가운데 두자리 숫자가 '84' 임
-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내 참여제한)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함이 원칙이나, 지방관서장이 현장실사를 통해 위험요인이 해소되어 지원사업의 사업목적인 '장기근속'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참여 가능
- ③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④ 소비·향락업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종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테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청년근로자 (신규참여자 / 재참여자 모두충족)

- ① 승인기업에 채용된 1년 이상 재직한 정규직* 청년 근로자
- ② 공고마감일 기준 19 ~ 39세 이하의 청년
- ③ 공고마감일 기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자
- ④ 월 평균임금**이 3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정규직 기준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월 평균임금 기준

- 모집공고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급여(총임금)를 기준으로 함
-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포함(세전금액기준)
- PI(생산성 격려금), PS(경영성과급)은 제외

○ 제외대상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근로자
- 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직접적인 재정적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 단,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심사 후 가능

❖ 중복참여 제외 기준

- 청년근로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재정적지원)이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에 중복지원 불가, 그 외는 허용
- '재정적지원'이란, 급여 보조성 성격을 가진 현금급여(각종 수당) 일체를 의미함.

3. 참여인원 선정 및 지원내용

참여인원 선정

-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의 서류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승인

[평가방식] 기업평가 50점 + 청년평가 50점

<참여기업> ① 직전년도('21년도) 기준 청년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된 순

② 청년고용비율(%)이 높은 순

③ 총북행복결혼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근속장려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는 순

④ 청년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순

(예시: 가족친화인증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등의 인증서)

<참여청년> 입사일이 오래된 순

※ 동점일 경우, 청년고용비율, 청년 일자리 창출 순으로 결정

- 서면 심사평가에 의해 높은 점수순으로 기업당 최대 5인 승인
- 재참여 인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승인

지원내용

- 근로자 1인 최대 2년까지 지원 (1년 단위 신청)

- 지원금은 청년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급

※ 신청승인일 기준일로부터 월 단위로 지급(1월 근속분부터 소급적용지급)

4. 신청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2. 1. 24.(월) ~ 2. 28(월) 18:00까지, 5주간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우편발송의 경우 신청서류의 접수처 도착기준으로 접수마감

- 접수처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고용지원팀 담당자 앞

☎ 28399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3층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 지원사업안내(사업공고/신청) 공고문 붙임 서식 참조

* 사업참여신청서 【붙임1~3,5,6,7】 및 구비서류 【붙임0】

□ 유의사항

- 참여 희망기업(사업주)은 사업장 및 근로자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 바라며, 신청서 등에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관련 서류의 기재내용 중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기업은 청년근로자의 지원금 신청(수령)에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등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지원금 신청기간 내 미신청시 주의 통보, 2회 이상 누적시 다음 참여모집 선정에서 감점으로 반영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고용지원팀(☎043-230-9788, 9781) 문의

【별첨 1】

□ **업종구분 기준**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직전연도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사업 판정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름 [별첨2 참조]

○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홈텍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단, 공식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불인정

○ **평균매출액등 산정방법**

구 분	내 용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사업연도 매출액 (당기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창업 업력* 1년 이상인 경우	“최근 1년간 매출액” : 매출액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 분기말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창업 업력 1년 이내에 신고매출액이 있는 경우	“최근 매출액” : 개업일 이후 확인가능한 최근 분기 말까지의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 업력(사업기간) :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의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

* 분기말 기준 : 각 분기말의 기준월은 3월, 6월, 9월, 12월로 함

□ **업종분류 근거**

- 해당 기업의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름 (공장등록증 상의 분류코드 앞 두 자리 참고)

【별첨 2】

중소기업(제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제조업	C32	
9.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5. 음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분류기호 A, B, D~S에 해당하는 업종(비제조업)은 비해당
- 위 표 제 19호 및 제 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발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3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복수의 업태/업종 운영 시 주된 사업이 제조업이거나 전업률 30% 이상

[규모기준]

- ①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 ②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일 것

[독립성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③ 독립성기준 :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2)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